

##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204호, 2009. 7. 24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합성수지제 재질별 규격 통폐합, 일반시험법 신설 등 개정하고자 「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」 전부개정고시(안)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.

### □ 주요내용

가. 기구 및 용기·포장 기준 및 규격의  
분류체계 개선

- (1) 현행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「일반기준」에서 착색료 규정 등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제조에 관한 사항을 「제조기준」으로 분리 신설
- (2) 젓병의 용량표시에 대한 허용차 규정 및 유리제 가열조리기구의 사용용도 표시를 위한 규정을 포함한 「용도별 규격」신설

나. 일부 합성수지제 재질별 규격 통폐합  
(현행 41종 → 37종)

- (1) 현행 합성수지제 중 부타디엔수지 및 실리콘수지를 고무제로 재분류
- (2) 현행 폴리에테르이미드를 폴리이미

드에, 에틸렌비닐알콜을 폴리비닐알콜에 통합

다. 원료물질 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

- (1) 기구의 경우, 접촉하는 식품에 따라 식품유사용매별로 세분화하여 증발잔류물 용출용매를 현행 1종(4% 초산)에서 4종(4%초산, 물, 20%에탄올, n-헵탄)으로 확대함으로써 용출규격 강화
- (2) 합성수지제 제조 시 잔류하여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원료물질에 대한 용출규격 추가 신설

라.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